

## 제14장 환경

### 제14.1조 배경과 목적

1. 양 당사국은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 환경 사안에 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환경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 장에서의 그들의 의도가 아니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무역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임을 인정한다.

### 제14.2조 규제 권리와 보호 수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환경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 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환경 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4.3조 환경법 및 규정의 적용과 집행

1.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 법 및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는 안 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는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환경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 제14.4조

##### 다자간 환경 협정

1. 양 당사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 사안에 대한 협상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각각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이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양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게 되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제14.5조

##### 투명성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공지 및 공공 협의,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와의 적절하며 적시의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제14.6조**  
**환경에 유익한 무역**

각 당사국은 관련 비관세장벽의 처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환경기술,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14.7조**  
**생물다양성**

1.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1992년 6월 5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및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그 밖의 관련 국제 문서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자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당사국이 사전에 통지한 합의에 따름을 인정하며, 각 당사국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4.8조**  
**기후변화**

1. 양 당사국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는 국제적 약속의 맥락에서 모든 국가들의 가능한 가장 폭넓은 협력과 효과적이고 적절한 국제적 대응에 대한 그들의 참여를 요

구하는 공동의 국제적 관심사안임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의 긴급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1992년 5월 9일 뉴욕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과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에 무역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3. 양 당사국은 저탄소·기후탄력적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의 증진이라는 세계적인 목적을 고려하며,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청정에너지 생산과 이용 그리고 완화·적응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 가용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접근,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는 무역과 투자 조치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 제14.9조

##### 환경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양자 협정 또는 약정에 기반하고 부속서 14-가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 제14.10조

##### 제도적 장치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의 연락처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국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2. 당사국은 연락처를 통하여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환경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 행정부 내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4. 위원회는 제14.10조 및 부속서 14-가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발효 첫 해 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5.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적 자원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그러한 자원은 이용 가능해야 할 것이다.

#### 제14.11조

##### 정부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연락처에 그 요청서를 전달한 후 60일 내에 양 당사국은 협의를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3. 한쪽 당사국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연락처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속히 소집되고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해결책은 공개된다.

#### 제14.12조

#####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행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6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14-가**  
**환경 협력**

1.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 분야에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협력 활동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 가. 완화 및 적응 조치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 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것을 포함한 자연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 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및 생태계 복원
- 라. 해양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양식업 발전
- 마. 수질 관리와 상수도, 폐수처리 및 우수(雨水) 관리 인프라를 포함한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 바. 폐기물 관리, 플라스틱 감축 및 순환경제
- 사. 대기오염 모니터링, 예방 및 통제
- 아. 토양오염의 모니터링, 예방 및 통제와 토양 복원
- 자. 환경 및 자연재해의 예방과 관리
- 차.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 카. 태양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및 재생 에너지
- 타. 환경 교육 및 대중 인식

파. 환경 기술 및 산업, 그리고

하.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협력 분야

2. 이 장에 따른 모든 협력 활동은 양 당사국의 이익, 우선순위 및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증진된다.